

9. 所得稅法施行規則中改正令

總理令 第530號 1995. 12. 5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2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상설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44조 제45호 본문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아.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자.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 차.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 카.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 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원협회

제44조에 제46호 내지 제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4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4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49.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50.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별지 제3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이 자 · 배 당 소 득 지 급 명 세 서

①계 출 자 로 명 ②자 로 관 리 번 호	③정 수 의 무 자		④법인명(상호, 성명) ⑤소재지(주소)		⑤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⑦계 출 대 상 기 간		원 천 정 수 세 역				②실명 구분 ③과세 구분	
	①성 명 (법 인 명) ③주 소 (소 계 지)	②주 민 (사 업 자) 동 록 번 호 ④계 좌 번 호 (발 행 번 호)	⑤지 금 대 상 기 간	⑥이자금액 (배당금액)	⑦세 용	⑧소 득 세	⑨법인세	⑩동 이 출 회 원 세	⑪주 민 세			
⑧일련 번호	⑧소 득 자 구 보 드											
1												
2												
3												
4												
5												
6												
7												
8												
9												
10												

22228-62111Q
1995. 3. 14승인

364mm x 257mm
(인쇄용지(복합) 70g/㎡)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③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교단체등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구분될 수 있도록 서식내용을 보완하여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법제처 제공〉

우리아빠 부실시공 우리엄마 하자민원